



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·파산 이야기(2) 회생절차의 큰 틀

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.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쳐 도산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.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.

2호: 회생절차의 큰 틀

“서울회생법원, ○○건설 개시결정”, “홍○○, 채권자목록 제출 … 회생담보권 269억, 회생채권 2조 6691억”, “티○ 회생계획안 속도 … 대규모 채권자부터 순차적 논의”, “발○,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”, “위○○ 회생절차 폐지 … 재신청 검토”, “항공사 플 ○○○원, 회생절차 조기 종결 … 법원 ‘회생에 지장 없어’”.

오늘부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회생과 파산에 관한 심화학습입니다. 위 기사 제목에서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, 이번에는 회생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. 회생절차를 단순화하면, 회생절차는 개시신청, 개시결정, 관계인집회, 인가결정, 종결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 채무자가 기업임을 전제로 단계별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시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입니다. 기업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(변제불능),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(지급불능),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(채무초과)이거나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신청요건에는 법적인 평가가 뒤 따르지만,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때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법원은 개시신청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인 ‘보전처분’과 채권자에 대한 권리행사 금지조치인 ‘포괄적 금지명령’을 합니다. 그리고 약 한 달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,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한 개시신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관계로 개시 여부 결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.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개시 여부를 약 3개월 동안 보류하는 결정 [ARS(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)]을 하기도 합니다.

개시결정 후 관계인집회 전 단계입니다.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, 채권 신고기간, 채권 조사기간,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.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데, 이를 DIP(Debtor In Possession) 원칙이라고 합니다. 관리인에 대한 견제 및 균형을 위한 조치로 CRO(Chief Restructuring Officer)도 파견합니다.

그리고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관계인집회 기일을 잡습니다. 한편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

사위원을 선임하여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등을 하게 합니다.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,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인 '계속기업가치'가 기업을 청산하여 얻을 수 있는 가치인 '청산가치'보다 낮으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합니다.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아도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.

관계인집회 이후 단계입니다. 법원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, 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결의하게 한 후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가결정을 내립니다.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종결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던 회생절차를 끝냅니다. 그런데 만약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.

위와 같은 것이 회생절차의 큰 틀입니다. 이 정도만 이해해도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의 회생절차를 바라보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. 다음 호에서는 파산절차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파산절차의 틀은 회생절차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관련구성원

김동규

변호사

02-316-4035

dkkim@shinkim.com